

벤처기업 확인절차 대폭 개편

- 협회가 운영하는 '벤처넷' 통해서 신청 가능 -

협회(회장 장홍순)가 그동안 중기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을 준비해온 '벤처넷(www.venturenet.or.kr)'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은 '벤처넷'을 통해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중기청이 부실 벤처기업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벤처비리 발생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신청 창구를 온라인 '벤처넷'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이뤄졌다.

벤처확인 신청을 위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진 벤처확인 신청이 개정벤처법이 시행되는 11월 1일부터 온라인 '벤처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기존 벤처확인 절차와 크게 달라진 점은 혁신능력평가 자가진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벤처확인서를 받은 후 작성했던 경영실태조사서를 이번달부터는 혁신능력평가 자가진단과 함께 벤처확인 신청 이전에 작성해야 한다.

넷째, 벤처확인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평가기관은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평가분야, 소재지, 평가기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확인 신청이 중기청에 접수되기 이전에 혁신능력평가를 통한 자가진단의 반복이 가능하다.

그 외에 벤처확인 요건 또한 벤처투자기업은 주



식인수총액(단, 신주만 인정)이 자본금의 10% 이상, 연구개발기업은 최소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기술개발기업과 기술평가기업이 통합되어 신기술 기업으로 변경되었다.

벤처넷을 통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면 옆의 그림과 같은 순서로 확인 신청을 받아야 한다.

먼저 혁신능력평가 자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자가진단 및 현지실사에 불응할 경우 중점 관리대상으로 구분되며 별도의 실사를 실시하여 벤처기업 확인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단, 혁신능력평가 자가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벤처넷의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경영실태조사서는 벤처기업 확인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므로, 되도록 기업 내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작성하여야만 한다. 이후 벤처확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벤처확인을 신청하기 위한 온라인 작업은 모두 끝나게 된다.

협회 오형근 상근전무는 "벤처넷은 기업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구축했다. 하지만 단순히 확인 신청을 받는 창구로서의 기능만 수행할 것은 아니다. 협회는 벤처넷에서 실시되는 자가진단 및 경영실태조사 등을 통해 얻게 될 자료를 활용하여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에 적극 나설 것이며, 벤처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을 엮어 주는 네트워크 매개체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신청 서식은 벤처넷 벤처확인 평가의 서식 다운로드 페이지(http://www.venturenet.or.kr/main/vn20/1010_11.html)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국내사업팀 박정배 팀장(02-562-5914)

개정 벤처확인 절차 및 방법

